대전장대 A1블록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입주자모집공고일 [2024.08.16], 주택관리번호[2024000460]

1. 건설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232번지 일원
행복주택 800호

[LH유튜브] [LH청약플러스]

'단지 소개영상' 바로가기

- LH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신청 관련 사항에 대해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신청과 관련한 상담은 주택신청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9.09.27일 이후 입주자 모집부터 **동일유형 공공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및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4.08.16(금)**이며, 이는 **입주자격(공급계층 및 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자산, 소득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공고문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 및 모바일앱(LH청약플러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대전장대A1BL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8.16)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청년 계층
- 청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출생 1984.08.17.~2005.08.16.)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③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6세 이하(출생 2017.08.17.이후)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6세이하(출생 2017.08.17.이후)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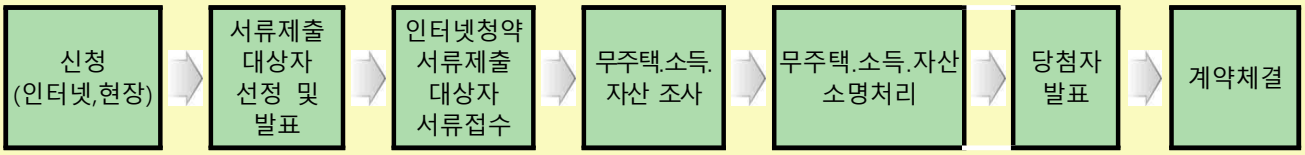
④ 고령자 : 65세 이상의 사람(출생 1959.08.16.이전)

⑤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또는 모바일(LH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다만, 65세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LH 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는 경쟁 시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서류제출대상자 중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입주자격 조사가 진행됩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 되지 않습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2.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공급형별	공급대상		공급호수		세대 당 계약면적(㎡)					임대조건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최대 거주 기간 (년)	구조 및 난방	입주예정
							그 밖의 공용면적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 (원)		임대 보증금 (천원)	월 임대료 (원)			
			우선 공급	일반 공급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주차장	합계	계	계약금	잔금							
19A	대학생 계층		60	80	19.99	11.775	2.622	7.467	41.855	**20,740**	1,037	19,703	**107,150**	(+)8,000	28,740	60,480	6	(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 (난방) 개별 난방	**2025.10**
														(-)16,000	4,740	153,810			
	청년 계층		20							**21,960**	1,098	20,862	**113,460**	(+)9,000	30,960	60,960			
														(-)17,000	4,960	163,040			
21A 21A1	대학생 계층		43	92	21.95	12.929	2.88	8.199	45.958	**22,780**	1,139	21,641	**117,690**	(+)9,000	31,780	65,190	6		
														(-)18,000	4,780	170,190			
	청년 계층		50							**24,120**	1,206	22,914	**124,620**	(+)11,000	35,120	60,450			
														(-)19,000	5,120	180,030			
	고령자		11	11						**25,460**	1,273	24,187	**131,540**	(+)12,000	37,460	61,540	20		
														(-)20,000	5,460	189,870			
	주거급여 수급자		10	11						**20,100**	1,005	19,095	**103,850**	(+)7,000	27,100	63,010			
														(-)16,000	4,100	150,510			
26A	청년 계층	소득 無	60	60	26.93	15.863	3.533	10.06	56.385	**26,860**	1,343	25,517	**138,770**	(+)13,000	39,860	62,930	6		
														(-)21,000	5,860	200,020			
		소득 有								**28,440**	1,422	27,018	**146,940**	(+)14,000	42,440	65,270			
														(-)23,000	5,440	214,020			
	주거급여 수급자		10	10						**23,700**	1,185	22,515	**122,450**	(+)10,000	33,700	64,110	20		
														(-)19,000	4,700	177,860			
26B	고령자 (주거약자용)		20	20	26.92	15.857	3.532	10.056	56.364	**30,020**	1,501	28,519	**155,100**	(+)15,000	45,020	67,600	20		
														(-)24,000	6,020	225,100			
44A	신혼부부 한부모		86	88	44.99	26.501	5.902	16.806	94.199	**52,000**	2,600	49,400	**268,660**	(+)27,000	79,000	111,160	6~10		
														(-)42,000	10,000	391,160			
	고령자		16	16						**49,400**	2,470	46,930	**255,230**	(+)26,000	75,400	103,560	20		
														(-)40,000	9,400	371,890			
	주거급여 수급자		12	12						**39,000**	1,950	37,050	**201,500**	(+)20,000	59,000	84,830			
														(-)31,000	8,000	291,910			

- 우선공급이 미달된 경우 남은 우선공급물량은 해당 공급대상자의 일반 공급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19형 및 21형의 "대학생계층"의 일반공급 물량과 "청년계층"의 일반공급 물량은 각 형별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일반공급물량 중 동일 공급형별로 청약미달인 계층의 공급물량은 타 공급대상 계층으로 전환하여 추첨 및 공급합니다.
 - 21A 대학생·청년계층의 남은주택은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 21A 고령자 남은주택은 -> 주거급여수급자 -> 대학생·청년
 - 21A 주거급여수급자계층의 남은주택은 대학생·청년 -> 고령자
 - 26A 청년계층 남은주택은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남은주택은 청년계층
 - 44A 신혼부부/한부모 남은주택은 ->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 44A 고령자계층 남은주택은 -> 주거급여수급자 -> 신혼부부/한부모
 - 44A 주거급여수급자계층 남은주택은 -> 신혼부부/한부모 -> 고령자
- 타 공급대상 계층으로 전환하여 추첨 및 공급하는 일반공급물량은 계층별 신청건수에 따라 전환순서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44A 중 2호는 가정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한 공간으로 배정되어 있으며, 가정어린이집 임차인은 별도 공고를 통해 모집할 예정입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갱신계약전까지 유지되며 갱신계약 시 소득 유무등 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갱신계약 시점에 자격검증을 거쳐 갱신계약 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주거약자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희망하거나 추가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형(26B형)'을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및「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등이 신청대상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19형,21형의 주택에는 냉장고, 가스쿡탑, 드레스룸(시스템선반),수납장, 책상 등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합니다.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신청자격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세대구성원의 범위**

세대구성원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대학생, 청년 계층의 주택 소유여부는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주택 소유여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신청자격별 소득·자산 기준

- **행복주택의 신청자격별 소득·자산기준은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의 공급대상별 상세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자산 기준은 가산항목에 따라 일정 비율로 가산되며, 가산항목이 중복시 합산 적용됩니다. 소득·자산 가산기준은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소득기준 가산 내용**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②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자산기준 가산 내용**

①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출산자녀는 '23. 3.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 공급계층 재청약 가능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8. 유의사항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공급유형(통합공임, 국민, 행복, 영구)내에서 중복신청도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에 동일한 공급유형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상실**됩니다. 중복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①입주자 모집공고일, ②신청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순서로 상실 처리됩니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 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3-1. 대학생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8.16)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와 ②~④)을 모두 갖춘 자

①-㉮ **(대학생)**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①-㉯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1인	4,179,557원 이하	120%
2인	5,957,283원 이하	110%
3인	7,198,649원 이하	100%
4인	8,248,467원 이하	100%
5인	8,775,071원 이하	100%
6인	9,563,282원 이하	100%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88,211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10,0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대학생 계층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자산 기준 》

* 가산 적용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구분	가산항목		최종 소득 · 자산기준 (한도)		
	가구원 수	출생자녀 수 (태아포함)	적용 소득기준	적용 자산기준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대학생	1인	0인	120%	100,000,000원	-
	2인	0인	110%	100,000,000원	-
		1인	120%	109,000,000원	-
	3인 이상	0인	100%	100,000,000원	-
		1인	110%	109,000,000원	-
		2인 이상	120%	119,000,000원	-

※ **출산자녀는 '23. 3.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 가산적용 상세 소득기준

가구원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110%	120%
1인	-	-	4,179,557원 이하
2인	-	5,957,283원 이하	6,498,854원 이하
3인	7,198,649원 이하	7,918,514원 이하	8,638,379원 이하
4인	8,248,467원 이하	9,073,314원 이하	9,898,160원 이하
5인	8,775,071원 이하	9,652,578원 이하	10,530,085원 이하
6인	9,563,282원 이하	10,519,610원 이하	11,475,938원 이하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88,211원을 합산하여 산정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함.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함. 같은 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제55조의 특수학교,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및 고졸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 포함하며 인정학력 취득시를 졸업시점으로 간주함

※ 대학생계층의 월평균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는

적용 대상	비고
• 신청자 본인 • 신청자의 부모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본에 부,모 모두 미등재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를 말함

※ '다음 학기'란 입주지정기간만료일 직후 도래하는 학기까지를 말함
※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은 공고일 현재 합격증명서 등을 통해 입학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순위**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대전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세종특별자치시, 충남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충북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이 거주지나 재학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2순위	충청남도(**1순위 지역 제외**)가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3순위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란 실제 본인이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캠퍼스 소재지를 말함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8.16)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 공급신청자로 전환됨

• **순위**

1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대학생)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자 (취업준비생) 거주하는 자
2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 대전광역시에	(대학생)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자 (취업준비생) 거주하는 자

• **배점**

항목		3점	1점
거주	대학생	부모 모두 대전광역시 외에 거주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유성구 외 대전광역시에 거주 (단, 부모 모두 유성구 외에 거주해야 함)
	취업준비생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3년 이상 거주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3년 미만 거주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의 배점항목은 우선순위 1순위에만 적용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1순위	순위 → 배점 →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자 → 추첨
	2순위	순위 →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자 → 추첨
일반공급		순위 → 추첨 **※ 전 주택형의 "대학생 계층"의 일반공급물량과 "청년 계층"의 일반공급물량은 각 형별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첨함**

※ 우선공급의 경우 동일 배점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3-2. 청년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8.16)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①-㉮와 ②~⑤를 충족하면 되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①-㉯와 ②~⑤를 만족하면 됨)을 모두 갖춘 자

①-㉮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84.08.17.~2005.08.16)**

①-㉯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고용보험법」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해당 세대의(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기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주택공급 신청자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세대주인 청년 (세대기준)	1인	4,179,557원 이하	120%
	2인	5,957,283원 이하	110%
	3인	7,198,649원 이하	100%
	4인	8,248,467원 이하	100%
	5인	8,775,071원 이하	100%
	6인	9,563,282원 이하	100%
세대원(본인)	1인	4,179,557원 이하	120%

* 7인이상의 해당가구는 6인 해당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88,211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7,3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 일 것

⑤ 본인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청년 계층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자산 기준 》

* 가산 적용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구분	가구원 수	출생자녀 수 (태아포함)	최종 소득 · 자산기준		
			적용 소득기준	적용 자산기준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세대주인 청년 (세대기준)	1인	0인	120%	273,000,000원	37,080,000원
	2인	0인	110%	273,000,000원	37,080,000원
		1인	120%	300,000,000원	40,790,000원
	3인 이상	0인	100%	273,000,000원	37,080,000원
		1인	110%	300,000,000원	40,790,000원
		2인 이상	120%	328,000,000원	44,500,000원
세대원(본인)	1인	0인	120%	273,000,000원	37,080,000원
	2인	0인	110%	273,000,000원	37,080,000원
		1인	120%	300,000,000원	40,790,000원
	3인 이상	0인	100%	273,000,000원	37,080,000원
		1인	110%	300,000,000원	40,790,000원
		2인 이상	120%	328,000,000원	44,500,000원

※ 출산자녀는 '23. 3.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 가산적용 상세 소득기준

가구원 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110%	120%
1인	-	-	4,179,557원 이하
2인	-	5,957,283원 이하	6,498,854원 이하
3인	7,198,649원 이하	7,918,514원 이하	8,638,379원 이하
4인	8,248,467원 이하	9,073,314원 이하	9,898,160원 이하
5인	8,775,071원 이하	9,652,578원 이하	10,530,085원 이하
6인	9,563,282원 이하	10,519,610원 이하	11,475,938원 이하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88,211원을 합산하여 산정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함)

※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함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의 경우 동일면적 대학생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①-㈏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함

단,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휴학포함)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 ①-㈏2)의 퇴직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판단함

※ ①-㈏3)의 '**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 **'청년계층'의 해당 세대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구분	해당세대 범위
•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신청자 본인 - 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 신청자가 단독세대주인 경우	- 신청자 본인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

• **순위**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대전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세종특별자치시, 충남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충북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충청남도(**1순위 지역 제외**)가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3순위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8.16)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 **순위**

1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유성구에 거주하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유성구 외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배점**

항목	3점	1점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3년 이상 거주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3년 미만 거주
②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이하 납입한 자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신청 시 청약저축 은행명 착오기입으로 인해 납입 인정회차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점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가입한 은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저축 납입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가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이며, 아래 조회방법에 따라 미리 납입 회차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직접 발급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접속(www.applyhome.co.kr) → 화면 중앙의 '청약통장순위확인서' 발급 → 순위확인서 발급하기 → [일반공급용] 선택 → 동의하기 → 공인인증서 본인 확인 → 청약신청 주택 선택 → 발급신청 후 내역 확인 * (주택명) 대전장대 A1블록 행복주택 **(주택관리번호) 2024000460**
은행 방문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신청 → 발급내역 확인

※ 특별시,광역시 우선공급 2순위 배점항목은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만 적용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순위 → 배점 →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자 → 추첨
일반공급	순위 → 추첨

※ 동일 배점 경쟁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3-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8.1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①-㉮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①-㉯와 ③~⑥를, 한부모가족은 ①-㉰와 ③~⑤를 모두 갖춘 자

①-㉮ **(신혼부부)** 혼인중인 자
①-㉯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①-㉰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포함)
②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자
③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

가구원수	일반 신혼부부		맞벌이 신혼부부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2인	5,957,283원 이하	110%	7,040,426원 이하	130%
3인	7,198,649원 이하	100%	8,638,379원 이하	120%
4인	8,248,467원 이하	100%	9,898,160원 이하	120%
5인	8,775,071원 이하	100%	10,530,085원 이하	120%
6인	9,563,282원 이하	100%	11,475,938원 이하	120%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88,211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 일 것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자산 기준 》

* 가산 적용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구분	가산항목			최종 소득 · 자산기준 (한도)		
	맞벌이 여부	가구원 수	출생자녀 수 (태아포함)	적용 소득기준	자산기준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한부모가족	X	2인	0인	110%	345,000,000원	37,080,000원
			1인	120%	380,000,000원	40,790,000원
		3인 이상	0인	100%	345,000,000원	37,080,000원
			1인	110%	380,000,000원	40,790,000원
			2인 이상	120%	414,000,000원	44,500,000원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X	2인	0인	110%	345,000,000원	37,080,000원
		3인	0인	100%	345,000,000원	37,080,000원
			1인	110%	380,000,000원	40,790,000원
		4인 이상	0인	100%	345,000,000원	37,080,000원
			1인	110%	380,000,000원	40,790,000원
			2인 이상	120%	414,000,000원	44,500,000원
	○	2인	0인	130%	345,000,000원	37,080,000원
		3인	0인	120%	345,000,000원	37,080,000원
			1인	130%	380,000,000원	40,790,000원
		4인 이상	0인	120%	345,000,000원	37,080,000원
			1인	130%	380,000,000원	40,790,000원
			2인 이상	140%	414,000,000원	44,500,000원

※ 출산자녀는 '23. 3.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 가산적용 상세 소득기준

가구원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110%	120%	130%	140%
2인	-	5,957,283원 이하	6,498,854원 이하	7,040,426원 이하	7,581,997원 이하
3인	7,198,649원 이하	7,918,514원 이하	8,638,379원 이하	9,358,244원 이하	10,078,109원 이하

4인	8,248,467원 이하	9,073,314원 이하	9,898,160원 이하	10,723,007원 이하	11,547,854원 이하
5인	8,775,071원 이하	9,652,578원 이하	10,530,085원 이하	11,407,592원 이하	12,285,099원 이하
6인	9,563,282원 이하	10,519,610원 이하	11,475,938원 이하	12,432,267원 이하	13,388,595원 이하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88,211원을 합산하여 산정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해당 세대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적용 대상	비고
• 신청자 본인 •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
• 신청자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을 말함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처리됨.**

※ 맞벌이부부 여부 판단기준이 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함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순위**

1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대전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세종특별자치시, 충남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충북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충청남도(**1순위 지역 제외**)가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3순위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8.16) 현재 일반 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됨

※ 순위 및 배점항목은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기준

• **순위**

1순위	신청자 본인이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유성구에 거주하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신청자 본인이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유성구 외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 **배점**

항목	3점	1점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3년 이상 거주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3년 미만 거주
②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이하 납입한 자

※ 신청 시 청약저축 은행명 착오기입으로 인해 납입 인정회차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점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가입한 은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저축 납입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가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이며, 아래 조회방법에 따라 미리 납입 회차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직접 발급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접속(www.applyhome.co.kr) → 화면 중앙의 '청약통장순위확인서' 발급 → 순위확인서 발급하기 → [일반공급용] 선택 → 동의하기 → 공인인증서 본인 확인 → 청약신청 주택 선택 → 발급신청 후 내역 확인 * (주택명) 대전장대 A1블록 행복주택 **(주택관리번호) 2024000460**
은행 방문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신청 → 발급내역 확인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특별시,광역시 우선공급 2순위 배점항목은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만 적용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순위 → 배점 → 해당 순위 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자 → 추첨
일반공급	순위 →추첨

※ 동일 배점 및 해당 지역 거주기간으로 인한 경쟁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3-4. 고령자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8.1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65세 이상인 자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1인	4,179,557원 이하	120%
2인	5,957,283원 이하	110%
3인	7,198,649원 이하	100%
4인	8,248,467원 이하	100%
5인	8,775,071원 이하	100%
6인	9,563,282원 이하	100%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88,211원을 합산하여 산정

②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이 34,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

《 고령자 계층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자산 기준 》
* 가산 적용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구분	가구원 수	출생자녀 수 (태아포함)	최종 소득 · 자산기준		
			적용 소득기준	적용 자산기준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고령자	1인	0인	120%	345,000,000원	37,080,000원
	2인	0인	110%	345,000,000원	37,080,000원
		1인	120%	380,000,000원	40,790,000원
	3인 이상	0인	100%	345,000,000원	37,080,000원
		1인	110%	380,000,000원	40,790,000원
		2인 이상	120%	414,000,000원	44,500,000원

※ 출산자녀는 '23. 3.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 가산적용 상세 소득기준

가구원 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110%	120%
1인	-	-	4,189,557원 이하
2인	-	5,957,283원 이하	6,498,854원 이하
3인	7,198,649원 이하	7,918,514원 이하	8,638,379원 이하
4인	8,248,467원 이하	9,073,314원 이하	9,898,160원 이하
5인	8,775,071원 이하	9,652,578원 이하	10,530,085원 이하
6인	9,563,282원 이하	10,519,610원 이하	11,475,938원 이하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88,211원을 합산하여 산정

※ '고령자'의 해당 세대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적용 대상	비고
• 신청자 본인 •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
• 신청자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8.16)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 순위

1순위	신청자 본인이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유성구에 거주하는 자
2순위	신청자 본인이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유성구외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자

• 배점

항목	3점	2점	1점
① 신청자 나이	75세 이상	70세 이상 ~75세 미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② 거주지 및 거주기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유성구에 5년 이상 거주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유성구에 5년 미만 거주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유성구외 대전광역시에 거주
③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14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자 : 3점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순위 → 배점 → 해당 순위 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자 → 추첨
일반공급	추첨

※ 동일 배점 및 해당 지역 거주기간으로 인한 경쟁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 주거약자용 주택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순위 → 배점 → 해당 순위 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자 → 추첨
일반공급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자 → 추첨

3-5. 주거급여수급자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8.1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 세대는 다음과 같음

적용 대상	비고
• 신청자 본인 •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
• 신청자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주거급여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말함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8.16)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됨

- **순위**

1순위	신청자 본인이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유성구에 거주하는 자
2순위	신청자 본인이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유성구외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자

- **배점**

항목	3점	2점	1점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유성구에 5년 이상 거주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유성구에 5년 미만 거주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유성구외 대전광역시에 거주
②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장애인,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인 경우 : 3점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순위 → 배점 → 해당 순위 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자 → 추첨
일반공급	추첨

※ 동일 배점 및 해당 지역 거주기간으로 인한 경쟁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공급일정

구분	공급대상	신청접수	인터넷청약자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서류제출 대상자발표	서류제출 대상자서류접수		
우선공급 일반공급	대학생계층 청년계층 신혼부부·한부모 가족 계층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인터넷(모바일)청약신청** **'24.08.26.(월)** 10:00 **~'24.08.29(목)** 17:00 ※인터넷(PC·모바일) 청약신청은 24시간 가능 (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현장접수** **'24.08.29.(목)** **10:00~17:00** (12시~13시 점심시간제외) **※현장접수장소** LH 대전충남지역본부 12층 임대공급운영팀	**'24.09.05.(목) 17:00 이후** **※ 확인**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24.09.09.(월) ~09.11.(수)** 10:00~17:00 **※ 우편접수** 서류제출은 우편접수만 받습니다. **※ 접수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108 LH대전충남지역본부 12층 임대공급운영팀 장**대A1블럭담당자앞 **'24.09.11(수) 우체국 소인분까지만 유효**	**'24.12.06.(금) 17:00 이후** (장소)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 ARS(1661-7700)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 청약플러스 별도게시	**-전자계약** **24.12.18.(수)09:00~ 12.19.(목)18:00** **-현장계약** **24.12.20.(금) 10:00~ 17:00** (12시~13시 점심시간제외) **※ 현장계약장소** LH 대전충남지역본부 12층 임대공급운영팀

* **청약접수는** PC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 명칭 : LH 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 청약신청 이후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시 우편으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우편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 LH대전충남지역본부 12층 임대공급운영팀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및 서류접수는 인터넷(PC 또는 모바일) 청약자에 한하며, 현장접수자(65세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함)는 신청접수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함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방법

ㅇ 인터넷(PC) 신청자

* **청약방법 :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하기 → 건설임대**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ㅇ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 **청약방법 : 모바일 앱(LH 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건설임대**

· 앱 ("LH 청약플러스" 검색) 설치 : 아이폰 →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 →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앱다운

* **모바일 청약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신 후, PC에서 스마트폰으로 공동인증서를 복사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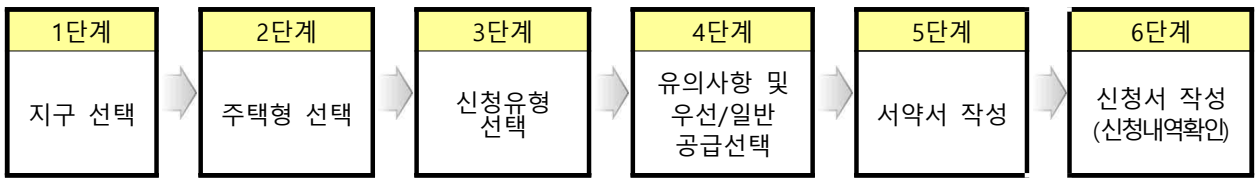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모바일앱 사용시 wifi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됩니다.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플러스 앱(App)의 '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ㅇ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절차



ㅇ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시 유의사항

·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모바일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ㅇ 기타사항

- 인터넷(PC) **청약 접수기간은 접수시작일 24.08.26(월) 10:00시부터 24.08.29(목) 17:00시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이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접수시작일 24.08.26(월) 10:00시부터 24.08.29(목) 17:00시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PC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C에서 수정·취소 가능)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
- 인터넷 청약하기 1~2일 전에 청약신청 처리할 PC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충분히 가상연습을 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 신청 방법

• **청약방법 : 신청자가 신청하려는 자격에 따라 「5. 신청서류」 확인 후 본인 신분증 및 해당서류 구비하여 아래 장소로 방문하시면 현장접수가 가능합니다.**

* 현장신청자가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본인이 해당하는 신청계층의 제출서류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현장 신청자는 현장접수 시점에 신청서류를 제출합니다.**

현장접수 일시	**'24.08.29(목) 10:00 ~ 17:00** [점심시간(12:00-13:00)제외]
현장접수 장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 LH대전충남지역본부 12층 임대공급운영팀**

• **현장 청약 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 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및 서류제출 방법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 : 24.09.05(목) 17:00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 P C : LH청약플러스→『청약』클릭 →『청약결과확인』클릭 →『서류제출대상자명단』클릭
- 모바일 : "LH청약플러스" 앱(App) →『청약』→『청약결과확인』클릭 →『서류제출대상자명단』클릭

○ 등기우편 접수 : 신청자 서류는 서류제출 기한[24.09.11] 내 등기 우편으로 접수받습니다.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 시, 서류제출기간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처리 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일반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장소(등기우편발송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 LH대전충남지역본부 12층 임대공급운영팀 대전장대 행복주택 담당자 앞

○ 현장 신청자 :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현장 접수자는 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서류제출을 갈음하며,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5.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4.08.16)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제출서류	비 고	부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 "대학생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과 부·모에 한하여 작성 *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	1통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작성 제외 * 만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정자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작성 제외	1통
주민등록표등본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주민등록표초본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 **우선공급신청자의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의 초본(단, 대학생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 **대학생 계층 우선공급신청 시 거주 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부모의 초본 각 1통 (단, 부모 사망시 제출 불요)**	1통
가족관계증명서	.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중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 . 신청인 **본인기준으로 발급**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거소)사실증명서등 해당서류 추가제출	1통
임신진단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통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대학생계층	대학생	. 재학증명서 - 다음 학기에 입학예정자는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 다음 학기에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 및 각서(공사양식)제출하고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 졸업예정증명서	해당 대학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해당 학교
	해당자만 제출	.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확인) - 신청자 본인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초본(동일 거주지 확인)	주민센터 주민센터
청년계층	청년 (만19세이상 ~ 만39세이하)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국민연금공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국민연금공단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구직급여 수급자] . 퇴직 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1년 이내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또는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지방고용노동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술인] .「예술인 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자의 경우 : 예술활동증명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자만 제출	.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자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 소득있는 업무 종사기간이 총 5년이 경과한 자 중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제외하는 경우 -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 증명서(최종학력 서류로 제출)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 전 별도 안내기간에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해당 직장 국세청 해당 직장(세무서) 해당 학교
신혼부부계층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센터
	예비 신혼부부	.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공사양식) . 예정 세대구성원 명단(공사양식) 제출 . 대표신청자가 아닌 신청자(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 . 입주 전까지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 사실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 확인을 위해 혼인관계증명서(※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대표신청자와 배우자가 동일 동본에 있지 않을 경우는 각각 제출)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주민센터
	해당자만 제출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경우 및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국민연금공단 해당 직장 국세청

		-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전까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해당 직장(세무서)
고령자		. 우선공급신청 시 장애인등 배점(③)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 국가유공자 확인원 -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 지원대상자 확인원('12.7.1전 등록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12.7.1이후 등록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해등급 1~14급자 :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자 :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주민센터 국가보훈처(지청) 국가보훈처(지청) 국가보훈처(지청) 국가보훈처(지청)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 . 우선공급신청 시 국가유공자 등 배점(②)을 받고자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원 -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유족)증 사본 또는 지원대상자 확인원('12.7.1전 등록자).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12.7.1이후 등록자) - 5.18민주화유공자 또는 그 유족 : 5.18민주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원 -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원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센터 국가보훈처(지청) 국가보훈처(지청) 국가보훈처(지청) 국가보훈처(지청) 국가보훈처(지청) 주민센터 주민센터
재청약자		.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행복주택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대학생이 병역의무이행 후 신청하는 경우 - 병적증명서 - 공문 등 이전 임대차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행복주택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입주자가 출산이나 입양으로 세대구성원수가 증가하여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으로 다시 신청하는 경우 - 자녀의 기본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병무청 이전 임대사업자 주민센터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 주택의 동·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LH 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 및 ARS(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함 (단,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 유지되며, 해당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소멸됩니다.)

■ 계약안내

○ **전자계약 [기간 : '24.12.18(수) 09:00 ~ '24.12.19(목) 18:00]**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개인별 가상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

【계약체결 절차】

<table>
<tr><td rowspan="2">계약금 입금</td><td rowspan="2">우리공사
입금확인
(SMS 발송)</td><td>【PC 계약체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td><td>【모바일 계약체결】
"부동산 전자계약" 앱 다운로드
(Google Play)</td></tr>
<tr><td colspan="2">로그인 (공동인증서/휴대폰인증) → 계약체결(공동인증서)
→ 계약서 출력, 보관(공동전자문서센터)</td></tr>
</table>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제공됩니다.**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 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18: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SMS는 신청접수 시 "SMS 수신동의"한 신청자에 한하여 발송하고, 수신동의하지 않은 신청자에게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 「전자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합니다.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출력·저장 가능합니다.

○ **현장 계약**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 ['24.12.20(금) 10:00 ~ 17:00]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공통서류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 계약자 도장* 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의 자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 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7. 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소유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⑫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금융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소득신고) - 근로복지공단 산재·고용보험 월평균 보수액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총 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 항공기,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재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8. 유의사항

<table>
<tr><th>관련항목</th><th>유의사항</th></tr>
<tr><td>거주기간
및
재청약에
관한 기준</td><td>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table>
<tr><th>입주자격</th><th>최대 거주기간</th></tr>
<tr><td>대학생, 청년 계층</td><td>6년</td></tr>
<tr><td>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td><td>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td></tr>
<tr><td>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td><td>20년</td></tr>
</table>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갱신계약 시점에 자격검증을 거쳐 갱신계약 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재청약 기준

•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대학생 등(대학생 및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장기근속자,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대상으로 입주 시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td></tr>
<tr><td>예비입주자</td><td>
■ 예비자의 계약 및 입주자격

• 공급대상자별 예비자로 선정 및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예비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 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td></tr>
<tr><td>갱신계약 등</td><td>
■ 갱신계약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 대학생 계층의 경우 대학 재학,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 대학(또는 고등학교) 졸업(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내

- 청년계층의 경우 만 19세이상 만 39세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 7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td></tr>
</table>

<table>
<tr><td></td><td>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가목에 따른 철거민 등 기존거주자 중 해당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됨
<table>
<tr><th rowspan="2">소득기준 초과 비율</th><th colspan="2">할증비율</th></tr>
<tr><th>최초 갱신계약 시</th><th>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th></tr>
<tr><td>10%이하</td><td>110%</td><td>120%</td></tr>
<tr><td>10%초과 30%이하</td><td>120%</td><td>130%</td></tr>
<tr><td>30%초과</td><td>130%</td><td>140%</td></tr>
</table>
•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계층' 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름</td></tr>
<tr><td>신청자격</td><td>• 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td></tr>
<tr><td>중복입주 금지</td><td>•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 공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td></tr>
<tr><td>신청 서류</td><td>•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td></tr>
<tr><td>당첨자발표 및 계약안내</td><td>•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함.</td></tr>
<tr><td>지구 및 단지특성</td><td>■ 지구여건
• 행정구역상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공공주택지구 내 위치하고 있습니다.</td></tr>
</table>

• 당해지구 토지이용계획 등의 확인을 통하여 단지 주변시설(도로, 버스정류장 등) 계획 등을 확인 후 계약에 응해야 하며, 단지 주변 시설 등으로 인한 소음 및 미관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 변경 또는계약해지 요구 등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당해지구의 개발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며 각종 영향평가, 에너지 사용계획, 지구계획(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각 시설 설치 계획) 등 각종 상위계획은 사업추진 과정 중에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의 현재 용지는 수요가 없을 경우 타 용도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도로,공원 등 사업부지 외의 개발계획 및 기반 시설은 국가기관, 지자체의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따라 설치되므로 사업 추진 중 일부 변경 될 수 있으며, 홍보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여건

• 본 단지는 도시계획도로에 면하고 있어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 먼지 및 진동,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향별・층별・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대전장대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에 포함되어 있어 입주 후 조성공사 및 주변 아파트 공사에 의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 차량 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장대지구 내 도시지원시설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등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건축공사 시행으로 소음, 분진, 공사차량 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구 동측 근린공원 내 저류지가 설치되어 있어 저류지 내 접근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장대지구 내 도로 및 녹지 등 상부에는 도시기반시설인 전력 지중화용 지상기기, 노상시설물(전주, 가로등, 신호등 등), 소화전 및 도로교통 안내표지판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해당 시설물에 대해 이설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장대지구의 인접 도시체계상 교통신호등(신호기), 횡단보도 등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설치 여부와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장대지구의 기존 북서측 지구외도로 확장공사가 계획되어 있어 향후 대전시, 유성구청 등과 협의 후 사업 추진 예정이며, 해당 공사 시행 시 기존 북서측 지구외도로로 통행이 불가합니다.
- 본 단지 인근에 월드컵 경기장이 근접해 있어 주경기장 및 보조경기장 축구경기시 소음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방송, 음악, 경기 중 응원 및 함성 등 – 경기당일 하루종일)

그 외 농수산물시장 등이 위치하며, 해당 지구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을 통하여 단지 주변 외부 여건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단지 여건

• 최고 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지하 B1F~지상 20F 규모입니다.

• 주차대수는 지상 135대, 지하 267대로 총 402대이며, 이 중 확장형 126대, 일반형 247대, 경형 16대, 장애인 주차 13대입니다. (근린생활시설 내 주차대수 3대 포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4항, 제5항 및 제16조에 의거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에 충전용 전원설비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급속 1대, 완속 20대)

• 단지 내 주요시설에 안전관리 및 범죄 예방 목적의 CCTV가 설치됩니다.

	• 102동 옥탑 지붕 층에 지상파(UHD 디지털) 안테나 및 무궁화 5호, 6호 위성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파 수신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배치구조와 동별 호수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 환경권의 차이가 있을 수 있거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각 동 전·후면에 식재되는 수목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단지 내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최상층 세대의 경우 옥상에 동력 및 무동력 흡출기가 근접해 있어 소음·냄새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탑 층에 태양광 발전설비,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되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24조의2에 의거하여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안테나 및 중계장치)가 옥상에 설치될 예정이며 차후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단 설치장소 및 설치수량은 이동통신사 사정(전파환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복도 및 엘리베이터홀과 같은 공간은 공용부위이므로 관련 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보도·조경 공간·주차장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점유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주차구획(지상 및 지하주차장) 및 대수는 계획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출입구에 주차 관제용 차량 차단기가 설치됩니다. • 주민공동시설에 내부 시설물(운동기구, 작업 공구, 장비, 비품, 인테리어 등)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본 단지의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시설계획 내부구조 및 마감 등은 향후 사업 인허가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민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출입구 차량 통제시설의 위치는 교통통제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위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명칭·동 표시·아파트 문양·BI로고·벽체 줄눈 및 외관 디자인(색채, 패턴 등)은 추후 관계기관 심의 결과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식재, 시설물, 포장 등 조경계획 및 색채디자인은 추후 관계기관 심의 결과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 시설물의 위치, 구조, 규모, 색채와 지반고 등은 추후 측량 결과, 지반 현황 및 각종 평가 심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계획고,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비상 차량 동선과 폭은 소방서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포장 재질, 색채 등은 동등 이상의 품질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데크형 지하주차장으로, 차량 및 보행자는 단지 진입 시 지하 1층으로만 진입할 수 있으며, 계단, E/V를

이용하여 지상층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내 진입 차량 가능 높이가 H=2.3m(차량 통행로 기준)으로 택배 운반 차량의 지하주차장 진입이 불가합니다.
- 단지 101동 조경 공간에 한전 PAD/SW 및 PAD/TR이 설치되며, 101동 주변 지하저수조에 전기실, 발전기실이 설치되어 주변에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비상 차량 동선과 폭은 소방서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포장 재질, 색채 등은 동등 이상의 품질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세대 천장 일부가 기계 설비 및 전기설비 시설물 등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 PIT층은 소방 법규에 따라 출입구가 점검구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전기실/발전기실, 기계실(지하저수조 및 아파트 PIT 내 집수정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급수, 오배수배관이 설치되어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소방 관련 공기 안전 매트가 설치되는 공간에는 조경 식재가 제한될 수 있으며 특히 1층 세대의 경우 식재 제한에 따른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 동의 전·후·측면에 설치되어 주차장 배기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개별난방 지구로서 도시가스가 공급됩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됩니다.
- 단지 내 가스 동 차단밸브 박스는 녹지 부위 등에 설치되어 철판 뚜껑으로 마감, 노출됩니다.
- 단지 내 원활한 가스공급을 위한 도시가스 정압기가 104동 서측 단지 경계부에 설치됩니다.

 (자세한 위치는 팜플렛 참조)
- 배치상 기계실, 전기실, 급·배기구, DA(환기구) 및 쓰레기 분리수거함 인접 세대는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개인 취향·민원에 의해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외부에 실외기가 설치되며 가동 시 일부 인접 세대는 소음·먼지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01동 공공세탁장, 공용셰어에 설치되는 세탁기, 빨래건조기 가동 시 소음·냄새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여건

- 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전용면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 주방가구 하부에는 바닥 마감자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주방가구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이 없습니다.
- 주방가구 싱크대 하부에는 배관용 분배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주방 가스레인지 상부에 주방용 자동 소화 장치(자동식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발코니 면적은 주택 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입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 홈통,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는 배수용 드레인이 설치됩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는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되며 이에 따라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화재 시 대피를 위하여 일부 세대 간 쉽게 파괴되는 구조의 간이 격벽이 발코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세탁실은 발코니에 위치하며 구획된 출입문이 없이 개방된 공간에 설치됩니다.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 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및 창호 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 및 발코니에 자연 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 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 예방조치가 필요합니다. • 벽걸이 TV 설치를 위한 별도의 보강은 없습니다. (내장 벽만 해당, 골조 벽일 때 보강 없이 설치 가능) • 대용량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등)의 경우 전기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설비 배관과 관련하여 PD 점검구가 세대 내외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급수·급탕 PB이중배관공법에 따라 수도꼭지 및 앵글밸브 부위 마감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의 일부 세대 경계 부위에는 일정한 힘으로 파괴할 수 있는 자재로 시공되며, 이에 따라 인접 세대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관 입구 신발장 맞은편에 세대 통합관리반(분전반/단자함)이 설치됩니다. • 단지 내 한전 PAD/SW 및 PAD/TR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세대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 설치되는 창호는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내 세탁기 장소가 협소하여 크기가 큰 규격의 세탁기는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치수 확인 및 세탁기 반입 가능 여부는 입주 전 사전방문 행사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창호, 가구, 타일, 석재, 바닥재, 벽지 등의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와 다소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이사 시 전면 발코니 방향은 사다리차 사용이 불가합니다. (분할 입면 창으로 사다리차 이용 불가) 동별 일부 세대만 복도 창으로만 사다리차 이용이 가능하며, 사다리차 이용 불가 시 E/V를 이용하여 이삿짐 운반이 가능합니다. ※ 이용 가능 세대 : 101동 - 없음 / 102동 - 5,6호 / 103동 - 5,6호 / 104동 - 1,2,3,4호 • 03동 9호~12호 1층 세대는 지상층 차량 전면 주차 시 거실 방향으로 차량 전조등 불빛이 들어와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과 6.5m 이격) •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 또는 그래픽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유사 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등에 적용된 자재 중 관계 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나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승인 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조감도, 단지 배치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개략적인 참고 자료로, 실제 시공하는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 과정에서 오류, 오기, 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를 위한 전열교환기가 실외기실에 설치되며 정기적인 필터 교체(유상)가 필요합니다.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욕실 내에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21A 타입과 21A 1타입 세대 내부는 동일한 평면을 가지나 설비 덕트(PD) 형상 차이로 인해 구분 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용 및 공용면적 같음)
기타사항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 해약발생시 일반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장애인 세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인 경우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 시 잔금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 부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 Bank, 신한은행, IBK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계약금 대출, 19세 이상 대학생의 경우 전세 보증금 대출 가능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 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9.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대전장대 A1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우산업개발(주) (122-86-20732)	-	㈜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외 1개사

10.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내역(기본 설치 품목)**

구분	설치 품목
출입문	통과 유효너비 90cm이상
	출입문옆 60cm이상 여유공간
	레버형 손잡이 설치
바닥	미끄럼방지용 마감재사용
	1)출입문에 방풍턱설치 : 1.5cm 이하 2)현관마루귀틀 높이 : 3cm이하
비상연락장치	거실, 침실, 욕실에 각각 설치
현관	동작감시센서가 부착된 등
	측면바닥에서 75~85cm 수직.수평손잡이
욕실	동작감지센서가 부착된 등
	위아래 이동 가능한 샤워기 설치
	좌변기,욕조,세면대,샤워공간 주위 안전손잡이
	밖여닫이, 미닫이 또는 미서기문으로 설치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선택 품목)**

주거약자 및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 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귀틀 경사로 설치	지체·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거실	비디오폰 높이 바닥에서 1.2m 이내	
	조명 밝기 600~900럭스(lx), 세대별 시각경보기 설치	청각장애인
부엌	좌식 싱크대 (취사용 가스 밸브 높이) 바닥에서 1.2m 이내	지체·뇌병변장애인, 휠체어 사용자
욕실	좌변기 옆 75cm이상 여유공간 확보	
침실	침실조명 밝기 300~400럭스(lx)	청각장애인
기타	시각장애인 거주 주거동 출입구에 음성유도 신호기 설치	시각장애인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신청 필요 없음)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고령자 단독 거주 세대는 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안전확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계약시 별도 신청 필요)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굽틀 경사로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3급이상 장애인
주방	좌식 싱크대	휠체어 및 의자사용 가능토록 설치	
	가스밸브 높이조정 (높이 1.2m 내외)	휠체어 앉아서 사용 가능 높이 (1.2m 내외)	
기타	음성유도 신호기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설치	시각장애인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유의사항**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수첩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편의시설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 준공 6개월 전까지 추가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단, 공정진행 정도에 따라 설치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음)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팀

리플릿 배부처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12층 임대공급운영팀**
임대문의	·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 **인터넷 - 마이홈포털 (http://www.myhome.go.kr)**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happyhouse2u)** **- LH 홈페이지 (http://www.lh.or.kr)**
당첨자 ARS	**1661-7700**
인터넷 청약	· **PC : LH 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임대주택)** · **모바일 : "LH 청약플러스" 앱(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임대주택)**
접수처 약도	

도로명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

△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08.16

LH 대전충남 지역본부